#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644

발의연월일: 2022. 12. 2.

발 의 자: 정춘숙·강은미·강훈식

김상희 · 김승원 · 김영주

김윤덕 · 김정호 · 윤관석

윤후덕 • 이원욱 • 이은주

한병도 의원(13인)

####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스토킹행위의 범위 확 대,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잠정조치기간 연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형벌 부과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토킹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밖에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하거나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나.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으로 정의하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17조의3 신설).
- 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접근 금지의 잠 정조치는 두 차례만, 유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제5항).
- 라.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제17조의2 신설).
- 마.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상당한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안 제17조의4 신설).
- 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연장이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17 조의5 신설).
- 사.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임시보호명 령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함(안 제17조의6 신설).

- 아.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등은 항고할수 있음(안 제17조의8 신설).
- 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함(제18조제3항 삭제).
- 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 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법률 제 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을 "정당한"으로, "가족에"를 "가족, 그 밖에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정보통신망을"을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가공·편집·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상대방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 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5.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제17조의4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제9조제5항 본문 중 "2개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잠 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를 "잠정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로 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와 피해자 및 그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앞의 "제3장 벌칙"을 "제4장 벌칙"으로 한다.

제3장(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 제17조의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 제17조의4(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 용한 접근금지
-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 및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7조의6(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7조의 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 호명령"으로 본다.
- 제17조의7(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 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17조의8(항고와 재항고) ① 제17조의4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1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17조의6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의9(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잠정조치의"를 "잠정조치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부분) 중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2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2. 제17조의4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6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 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

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2항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정조치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u>상대방의 의</u>	1 <u>정당한</u>
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	<u>가족, 그 밖에 상대방</u>
인, <u>가족에</u> 대하여 다음 각	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에</u>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	
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의	<u>정보통</u>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	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
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	<u>라 한다)을</u>
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2. ~ 4. (생략) <신 설>

-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④ (생 략)
  -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 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 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 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 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가공·편 집·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 위
- 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상대방의 정보를 훼손하거 나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 위
- 2. ~ 4. (현행과 같음)
- 5.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제17조 의4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3개월

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 | 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 ------ 잠정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 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 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와 피 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조치)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 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17조의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의 관할은 스토킹행위자의 행 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 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 다.

-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 제17조의4(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 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 경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3 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 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

<신 설>

할 수 있다.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의 ①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의6(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4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신 설>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 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 17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 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 다.

제17조의7(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수 있다.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 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 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의8(항고와 재항고) ① 제1 7조의4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제3장 벌칙

(제1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1 7조의6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 항을 준용한다.
- ③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9(위임규정) 피해자보호 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 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제4장 벌칙

- 제18조(스토킹범죄) ① · ② (생 제18조(스토킹범죄) ① · ② (현 략)
  -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 <삭 제> 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 제20조(잠정조치 등의 불이행죄) 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 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행과 같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 | 해당하는-----3년----------3천만원-----

-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한 사람
- 2. 제17조의4에 따른 피해자보 호명령 또는 제17조의6에 따 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 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 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 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제21조(과태료) <삭 제>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 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이 부과·징수한다.

에 처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